

# 「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. 02. 13 (수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8. 02. 20(수)

다. 상정일자 : 2008. 02. 21(목) 제14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 
제2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가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자치행정과장 김일래)

가.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포괄하는 광의의 복지 개념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과 직제순위를 조정하고, 행정 내·외적 변화로 인해 기능이 미약해진 부서간 통·폐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살기좋은 고장 만들기를 위한 경쟁력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자 관련 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부서신설 및 폐지 등에 따라 행정기구 직제 순위 조정

(안 제3조, 안 제3조의2)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 개정(주민생활지원과장 4·5급)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직제 상향 조정
- 업무연관성이 높은 문화와 체육을 통합하여 새롭고 효과적으로 육성·발전시키기 위하여 “문화체육과” 신설
- 관광과 연계한 체계적인 경제정책과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“관광경제과” 신설
- “문화관광과” 및 여유기구인 “스포츠사업단” 폐지

- ※ ①기획감사실 ②주민생활지원과 ③민원봉사과 ④자치행정과  
 ⑤재무과 ⑥문화체육과 ⑦관광경제과 ⑧환경과 ⑨산림과 ⑩건설과  
 ⑪도시과 ⑫재난관리과

- 부서명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, 업무성격에 맞게 하기 위하여 부서명 변경(안 제3조, 제9조제3호)
  - “지역도시과” ⇒ “도시과”
  - “재난안전관리과” ⇒ “재난관리과”
  - “기술개발과” ⇒ “기술지원과”
- 부서간 업무 조정 및 신설부서에 대한 대강의 사무분장(안 제3조, 제9조)
  - 분장사무에 대한 구체화 및 용어 변경
  - 문화체육과, 관광경제과에 대한 사무분장
  - 부서간 업무 조정
    - ▶ 교통행정업무 : 민원봉사과 ⇒ 건설과
    - ▶ 청소년업무 : 주민생활지원과 ⇒ 문화체육과
    - ▶ 하천업무 : 건설과 ⇒ 재난관리과
    - ▶ 양곡관리 업무 : 기술개발과 ⇒ 농정과
-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(안 별표1)
  -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 등에 따른 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 : 10개소  
 (지소 2개소, 진료소 8개소)
  - 행정구역명칭변경(도암면 ⇒ 대관령면)에 따른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명칭 및 위치 변경 : 3개소(지소 1개소, 진료소 2개소)
-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(안 제1조,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11조, 제14조, 제17조)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이상진)

가. 본 조례안은 저출산·고령화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주민생활 지원업무의 증가에 따라 주민생활과 직제를 상향 조정하고, 행정기구의 조정을 통해 보다 능동적인 조직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,

나.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주민생활지원과 직제를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상향조정하여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지원업무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,
- 문화관광과 및 여유기구인 스포츠사업단을 폐지하고 문화와 체육을 통합하여 문화체육과를 신설하고, 관광과 지역경제업무를 연계하여 관광경제과를 신설하며,
-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서간 일부 업무가 조정되었음.
- 또한 보건지소 등 신축으로 관할구역 변경,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“대관령면”으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명칭변경과 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,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“별표3” 시·군·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을 보면 인구 3만이상 5만미만의 군의 경우 12개이내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. 또한 동 규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,

다. 결과적으로,

- 위임된 권한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,
-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원칙인 표준정원제를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여 지역의 행정수요에 적절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

있도록 자율적인 조직관리를 유도하고 있는 행정현실을 감안하여  
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**

**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**

**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**【붙임】**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